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별페이지 23p 해설 번호 : 21	해설	㉔ 창랑호(DC-3기) 납북(1958) → ㉔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(1968) → 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(1976) → ㉔ 울진·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(1983)	㉔ 창랑호(DC-3기) 납북(1958) → ㉔ 울진·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(1968) → 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(1976) → ㉔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(1983)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
178p 14줄	개념,공식-설명	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,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, 반체제 인물색출, 정치범 수용소 관리, 반탐, 해외정보수집·공작, 국경경비·출입국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함	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,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, 반체제 인물색출, 정치범 수용소 관리, 해외정보수집·공작, 국경경비·출입국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함
		수정 사유	본문 오류
307~308p	문제-본문	<p>㉔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·범위·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</p> <p>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·조정 범위의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㉔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·범위·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㉔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</p> <p>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·조정 범위의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

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법령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